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10일, 이견태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7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2024. 9. 23.)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
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 11. 20.) 상정 · 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 12. 1.)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안건조정위원회(2025. 12. 3.)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법제사법위원회(2025. 12. 3.)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건태의원)

검사, 사법경찰관 및 기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수사, 공소, 공소유지, 형집행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의자, 피고인을 처벌하거나 처벌받지 않게 하거나 가볍게 처벌하기 위하여, 범죄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아니하거나, 피의자, 피고인에게 유리, 불리를 불문하고 증거를 은닉, 불제출, 조작하거나 증거해석, 사실인정, 법률적용을 왜곡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으로는 위와 같은 법왜곡행위를 단속, 처벌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 형법을 개정하여 검사, 사법경찰관 및 기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법 왜곡행위를 단속, 처벌하고자 함(안 제123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공명정대한 법집행을 담보하고 국민의 인권보호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점, 징계나 탄핵 등 현행 제도만으로는 검사 등 수사기관의 법왜곡행위를 효과적으로 막는 데 한계가 있는 점, 현행 입법례도 유사 내용의 규정을 도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인정될 것으로 보임.

다만,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처벌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기소편의주의와의 관계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 개정안의 구성요건과 증거인멸죄, 직권남용죄 등 현행 「형법」상 범죄 체계와의 조화를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점, “증거해석, 사실인정, 법률적용을 왜곡한 경우”와 같은 구성요건은 명확성 원칙에 따라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 불명확한 구성요건은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고발 남용 등으로 이어져 수사기관의 정상적 업무수행 위축과 법률분쟁의 지속성을 초래하여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장동혁의원)

증거를 은닉하거나 조작한 경우 당연히 다른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죄를 신설하는 것에 의문임.

(조배숙의원)

증거해석과 사실인정, 법률적용을 왜곡하여 기소가 됐을 때 법원이 판단하면 됨.

(이건태의원)

범죄혐의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하지 않은 경우 그 검사는 법왜곡죄로 처벌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

(김용민의원)

법 왜곡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위법한 지시에 거부할 근거가 될 것임.

(위원장 정청래)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또는 있는 것도 확대·과장하거나 또는 축소·은폐하거나 없는 것을 또 있는 것으로 조작해 내거나 이런 경우는 범죄에 해당됨.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용민)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6. 안건조정위원회 심사내용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박지원)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7. 찬반토론의 요지

(곽규택의원)

2심 재판에서 무죄선고한 사건을 3심재판에서 파기환송하면 법왜곡죄에 해당하게 됨. 판사와 검사를 협박하게 됨.

(박은정의의원)

2023년 독일에서도 마스크 착용 관련하여 정치적 편향에 따라 특정 집단에 유리한 결정을 한 사건에서 법왜곡죄 유죄를 인정함. 우리도 법 적용을 잘못된 판사 검사를 법왜곡죄로 처벌할 필요

8.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